

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

[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]

입찰대행안내

- 본 입찰은 국·도·시·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보조사업자인 성지드림빌(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복지재단)이 발주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·정산하여야 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.
- 아울러, 본 입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산시에서 입찰 절차를 대행하는 사항으로, 규격서·구매내역서의 내용 및 물품의 납품·설치 관련 책임은 보조사업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이행 및 이에 따른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.

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- 가. 건 명: 2026년 정신요양시설(성지드림빌) 냉난방기 구입·설치
- 나. 기초금액: 금86,571,610원(금팔천육백오십칠만일천육백일십원)
- 다. 납품기한: 계약일로부터 60일
- 라. 납품장소: 충남 논산시 연산면 한전2길 45-14
- 마. 구매내역: 냉난방기(전기히트펌프 실외기·실내기 등) 구매·설치 1식
〈내역서, 규격서 참조〉
- 바. 납품조건: 현장설치도(설치 및 시운전 포함)

※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전에 **물품규격서, 구매내역서, 계약조건**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, 구매 대상 물품 전부를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

2. 견적제출 및 개찰

- 가. 견적서 제출기간: 2026. 9. 9.(수) 14:00 ~ 2026. 9. 15.(화) 14:00
- 나. 개찰일시 및 장소: 2026. 9. 15.(화) 15:00 입찰집행관 PC
- ※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※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재입찰서 제출

마감일시는 익일 14:00(익일이 토요일·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로 하고, 15: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.

3. 전적제출 참가자격

※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본 사업의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, 전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전적제출일까지(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)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)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업체
- 나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 자리[전기히트펌프(세부품명번호 10자리: 4010180601)] 및 [히트펌프용실내기(세부품명번호 10자리: 4010178701)]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
- 다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·가스공사업(주력분야: 기계설비공사) [업종코드: 6202] 등록을 필한 자
- 라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

※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4. 전적서의 제출

- 가. 본 전적제출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전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(이하 “나라장터”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다. 본 전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.

- 라.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「보낸문서함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5. 견적제출의 무효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.

6.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

- 가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$\pm 3\%$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.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%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,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다.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7. 기타사항

- 가.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,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, 공고문, 물품규격서, 구매내역서, 계약조건, 청렴서약서 및 그 밖에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합니다.

다.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**공급가액의 1.5%**에 해당하는 **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**를 매입하여야 합니다.

라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) 전적제출에 관한 사항: 보건소 보건행정과 ☎746-8014

2) 사업에 관한 사항: 보건소 보건위생과 ☎746-8072

성지드림빌 ☎735-0307

3)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: 조달청 콜센터 ☎1588-0800

2026. 9. 9.

논산시보건소 재무관

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,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, 담합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 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“4”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공고일’은 ‘안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 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준·비속인 사업자
 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 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준·비속)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 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(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) 이상인 자. 다만,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